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자산운용기준

제 정 2011. 11. 22 개 정 2013. 12. 16 개 정 2014. 03. 21 개 정 2014. 11. 25 개 정 2015. 05. 29 개 정 2016. 10. 11 개 정 2018. 06. 01 개 정 2020. 10. 05 개 정 2021. 11. 02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원칙) ① 이 기준은 자산운용위원회 및 위험관리·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은 자산운용 위원회의, 위험관리·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위험관리·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만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, 관련내규 및 시장 관행의 순서로 준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자산운용관련 담당자라 함은 자산운용부문(Front Office),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부문(Middle Office), 회계 및 지원 부문(Back Office)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.
- 2. "여유자금"이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자산 중에서 현금, 예치금, 유가증권, 수익증권 등의 금융자산을 말한다.
- 3. "단기자금"이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자금을 말한다.

- 가. 현금성자금 : 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금
- 나. 유동성자금 : 운용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금
- 4. "중장기자금"이란 운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금을 말한다.
- 5. "은행권 금융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「은행법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
 - 나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 - 다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 - 라. (삭제)
 - 마. (삭제)
- 6. "위탁운용사"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투자일임업으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"업(業)"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.
- 7. "판매회사"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·투자 중개업 및 신탁업으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한 회사를 말한다.
- 8. "연기금투자풀"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하여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펀드로 구성한 재간접투자제도를 말한다.
- 9. "직접투자"라 함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자산운용 담당자가 투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10. "간접투자(위탁운용)"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위탁운용사가 투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11. "국내신용등급"이란 국내에 등록된 신용평가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가장 최근에 평가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말한다.
- 12. "목표수익률"이란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전적으로 설정한 목표치이며, 전략적 자산배분안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수익률로 정의된다.

제 2 장 자산운용위원회

제4조(설치) 기금은 자산운용의 투명성,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, 자산운용에 관한 전반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한다.

제5조(구성) 자산운용위원회는 자산운용 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다음 각호의 내·외부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.

- 1. 기금관리부장, 리스크관리부장
- 2. 자산운용, 기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원장이 선임한 외부전문가

제6조(임무) 자산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자산운용전략에 관한 사항
- 2. 거래대상 금융기관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
- 3.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등

제7조(위촉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- ② 자산운용 담당자는 회의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고, 다음 사항을 기재 한다.
- 1. 소집일시
- 2. 출석위원 및 기타 관련자의 성명
- 3. 심의안건 및 출석자의 의견
- 4. 심의내용, 표결 등의 의결결과
- ③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- ④ 자산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
- 1. 자산운용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,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2. 자산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자산운용 담당자는 위원장에게 개최 안건을 보고하고,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유선,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의 방법으로 안건의 주요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3. 자산운용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4.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자산운용위원회 위원의 준수의무) 자산운용위원회의 각 위원은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자산운용위원회 각 위원은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.
- 2. 자산운용위원회 각 위원은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자산운용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3. 자산운용위원회 각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및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.
- 4. 자산운용위원회 각 위원은 투자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투자기관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·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5. 자산운용위원회의 각 위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기관이 발주하는 법률자문, 소송대리, 연구과제 등을 수행 할 수 없다.
- 6. 자산운용위원회의 각 위원은 1호 내지 5호의 의무와 관련하여 <별표 6>의 서약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자금의 운용

제9조(운용방향) ① 기금은 설치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여건에 따라 공공성, 안정성,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은 재보험금 지급 등 업무 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유동성자금을 확보한다.

제10조(자산배분원칙) ① 기금의 자산배분은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.

② 자산배분은 전체 운용자산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단기자산과 중장기 자산으로 배분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자산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) ①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연간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자산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자산별 및 투자방법별 배분계획
- 2. 적정 유동성 규모
- 3.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
- 4. 기준수익률
- 5. 기타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
- ③ 금융시장의 환경변화 및 자금수급의 급변으로 인하여 연간자산운용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용방법) 여유자금은 「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」제20조에 규정된 「은행법」에 의한 은행, 국채·공채 또는 그 밖의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을 통해 운용한다.

제13조(직접투자 및 간접투자) 기금의 자산운용은 자산운용지침상의 자산배분을 감안하여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방식을 활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간접투자방식으로 외부 위탁 운용할 수 있다.

- 1. 운용대상 자금의 규모 확대, 제도의 변경 등으로 내부운용이 비효율적일 때
- 2. 운용자금이 소규모로 축소되어 내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비용에 비하여 외부위탁 운용 시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. 특정자산군에 대한 투자 시 운용상의 전문성이 요구될 때
- 4.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투자전략의 다변화를 통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
- 5. 연기금투자풀에의 운용

제14조(현금성자금의 관리) ① 3개월 이내에 발생되는 경비 및 재보험금지급 등 현금지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정 현금성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.

② 매월 월간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제1항에 따른 현금성자금 규모의 유지를 고려

하여야 하며, 자금의 입출금이 용이한 금융상품 중심으로 운용한다.

제15조(유동성자금의 관리) ① 3개월 이상 1년 이내에 예상되는 재보험금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적정 유동성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유동성자금은 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수익성이 높은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한다.

제16조(중장기자금의 관리) 중장기자금은 현금성자금 및 유동성자금 이외의 자금 으로서 금융시장 전망과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1년 이상의 중장기 금융 상품으로 운용한다.

제17조(운용상품의 선정기준) 운용상품을 선정할 때에는 자산운용지침의 투자대상 자산군 중 기금의 운용여건에 따라 공공성·안정성·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.

제18조(만기도래전 중도해지 기준) 운용중인 투자상품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할 수 있다.

- 1.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
- 2. 금리, 주가, 환율, 다른 투자의 수익률, 자금조달구조 등의 변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
- 3.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또는 투자적격등급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
- 4. 법령·규정·지침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
- 5. 위험관리·성과평가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기준의 "붙임 1. 위기상황매뉴얼"의 위기단계별 대응조치에 해당하는 경우
- 6. 신용악화 또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만기까지 보유 시 원리금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7. 기타 자산운용 담당부서장이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 4 장 은행권 금융기관 운용

제 1 절 평가 및 선정

제19조(선정 대상) ① 운용 대상기관으로 선정할 은행권 금융기관(이하 "은행"이라한다)은 기준 제3조제5호의 은행으로 한다.

② 자금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점(본점직할 포함) 또는 여의도 관내를 원칙으로 한다.

제20조(평가 및 선정 절차) ① 은행의 평가는 금융감독원,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.

- ② 은행의 선정은 자산운용위원회가 심의한 외부위탁기관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자산운용담당부서에서 평가 후 확정한다.
- ③ 은행의 선정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.
- 1. 각 은행별 총 평점은 '<별표 1> 은행권 금융기관 평가기준'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- 2. 제1호의 평점결과를 '<별표 4> 등급배분 및 개별기관별 투자한도'에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한다.
- 3. 자산운용 가능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리를 조사하여 금리상위 순위별로 예치한도를 차등화하여 운용한다.
- ④ 여유자금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B등급 이상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2 절 운 용

제21조(투자대상) 은행에 대한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정기예금
- 2. 양도성예금증서(CD)
- 3. 환매조건부채권(RP)
- 4. 수시입출식예금(보통예금, MMDA 등)
- 5. 기타 은행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금융상품

제 5 장 직접투자

제 1 절 주식투자

제22조(운용원칙) 주식 직접투자는 내재가치가 우량한 종목에 대한 장기투자를 원칙으로 하여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하여 허용된 위험한도 내에서 기준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3조(투자가능주식) 직접투자가 가능한 주식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종목으로 신용등급 A이상에 한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투자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1. 최근 2년간 연속 당기순손실을 시현한 종목
- 2. 편입시점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1천억 원 미만인 종목
- 3. 자본금 300억원 미만인 종목
- 4. 반기 일평균 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인 종목
- 5.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 종목 (기 투자 종목이 향후에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)
- 6. 기타 자산운용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

제24조(투자가능종목군의 구성) ① 주식 직접 투자 시 투자가능 종목군 및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투자가능 종목군 및 모델포트폴리오 구성과 변경은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주가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조정하고 이를 자산운용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5조(종목별 투자한도) ① 동일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및 우선주 각각의 발행주식 총수의 5/10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.

- ② 동일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및 우선주의 시가기준 보유 잔액 총액이 보유주식 시가총액의 10/10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.
- ③ 주가상승 동으로 종목별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.

제26조(보유주식의 위험관리) ① 보유주식의 시장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1. 운용담당자는 장부수익률이 한국거래소에서 정한 업종지수의 수익률에 비하여 15%포인트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종목에 대하여 특이사항을 점검하여 자산운용 담당부서장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.
- 2. 운용담당자는 장부수익률이 15%이상 하락하고 업종지수 수익률에 비하여 15%포인트 이상 하락한 종목에 대하여 특이사항 등을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결정에 따른다.
- 3. 장부수익률이 20%이상 하락하고 업종지수 수익률에 비하여 20%포인트 이상 하락한 종목은 5영업일 이내에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시장가격은 종가를 기준으로 하며 유상증자시 장부가격은 권리락 시점부터 청약완료시까지 시장가격을 주당 권리락 금액만큼 조정하여 적용한다.

제27조(유상증자 참여 및 매수청구권 행사) 유상증자의 참여 및 매수청구권의 행사는 기금이 보유한 주식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한 후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 2 절 채권투자

제28조(운용원칙) ① 채권운용은 가급적 만기 보유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.

- ② 채권운용은 채권종류별, 발행기관별 및 만기구조별로 분산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.
- ③ 채권운용은 안정성을 고려하여 수익성 대비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 매도할 수 있다.
- 1. 평가이익의 실현
- 2. 차익거래 및 교체매매

제29조(투자가능채권) 직접투자가 가능한 채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채권에 한한다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

- 2.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(이하 "특수채"라 한다)
- 3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(이하"금융채"라 한다)
- 가. 한국산업은행 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은행
- 나.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은행
- 다. <삭제>
- 라.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
- 다.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
- 4.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(이하"여신금융 채권"이라 한다)
- 5.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(이하"회사채"라 한다)
- 6.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(이하"자산유동화증권(ABS)"이라 한다)
- 7. 기업어음(CP)
- 제30조(투자대상의 적격기준) ① <u>제29조</u>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신용등급이 A이상인 경우에 한한다. 다만, <u>제29조</u>제7호는 A2이상인 경우에 한한다.
- ② 보증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과 발행기관의 국내신용등급 중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채권은 투자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④ 국내신용등급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. 다만 최근 1년 이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가장 최근에 평가한 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.
- ⑤ 신용등급은 채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채권에 관하여 각 신용평가기관별로 부여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기관 또는 준거자산에 부여한 신용등급을 적용한다.
- 제31조(종목별 투자한도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은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.
- ② 특수채, 국내신용등급이 AA+이상 금융채 및 AAA인 회사채의 경우에는 발행기관 자기자본의 30/10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.

- ③ 제26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 채권 발행 총액의 10/10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.
- ④ 제1항 내지 3항에 해당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는 발행기관 자기자본의 10/100을 초과하여 매입할 수 없다.
- ⑤ 채권에 대한 직접 투자한도 계산시 은행권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치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.
- ⑥ 채권 발행회사의 자기자본 변경 등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조속히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. 제 3 절 신종증권 및 주식관련채권 등의 투자

조(유용위치) ① 신종증권 및 주신과려채권 등의 투자는 다양하 산품

제32조(운용원칙) ① 신종증권 및 주식관련채권 등의 투자는 다양한 상품구조를 활용하여 수익창출의 기회를 확대하고 운용자산의 위험요소에 대한 헤지 (Hdege) 수단으로써 투자한다.

② 신종증권 및 주식관련채권등의 투자는 고도화된 상품구조를 감안하여 내재된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투자하여야 한다.

제33조(신종증권의 투자) ① 신종증권에 대한 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증권에 한한다.

- 1. 금리, 신용, 주가(주가지수를 포함한다), 상품 및 통화 등의 준거자산 가치에 연계되어 가치가 변동되는 증권("연계신종증권"이라 한다)
- 2. 파생상품이 내재된 증권("구조화신종증권"이라 한다)
- 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2항에 따른 증권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투자대상("기타신종증권"이라 한다)
- ② 원금 비보장형 신종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 및 위험관리·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제34조(주식관련채권 등의 투자) 채권 · 주식의 직접투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채권("주식관련채권"이라 한다) 및 신주인수권에 투자하거나 보유주식의 권리행사로 주식관련채권 및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 및 위험관리 ·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- 1. 전환사채(Convertible Bond)
- 2. 신주인수권부사채(Bond with Warrant)
- 3. 교환사채(Exchangeable Bond)
- 4. 이익참가부사채(Participating Bond)
- 5. 그 밖의 주식에 연계된 채권(Equity-linked Note)

제 6 장 간접투자

제1절 총칙

제35조(투자대상) ① 간접투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위탁펀드
- 2. 특정금전신탁상품, 금전신탁상품
- 3. 기타 간접투자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금융상품
- ② 제1항제1호 위탁펀드의 운용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유형별 세부내용은 연간 간접투자계획에서 정한다.
- 1. 채권형
- 2. 채권파생형
- 3. 주식형
- 4. 주식파생형
- 5. 혼합형
- 6. 혼합파생형
- 7. MMF 등

제36조(투자방법) ① 위탁펀드는 사모단독펀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연기금투자풀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재간접형펀드 구조를 감안하여 사모단독 이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.

② 일임투자의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에 운용대상, 운용방법, 기준수익률, 수수료 및 위험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37조(간접투자계획의 수립) ① 연간간접투자계획은 연간 자산운용계획을 감안하여 자산운용계획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.

- ② 연간간접투자계획은 운용유형별 투자 계획, 간접투자기관의 선정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연간간접투자계획은 국내외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 또는 연간 자산운용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- ④ 간접투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중 허용위험한도, 위험관리 등은 위험관리 담당부서장이 정하되, 허용위험한도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 관련사항은 자산운용 담당부서장이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 다만, 간접투자시 편입가능자산은 이 기준 또는 연간자산운용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38조(간접투자기관의 평가 및 선정) 간접투자기관의 평가 및 선정은 <별표 2>부터 <별표 5> 까지의 위탁기관 평가기준 등에 의거하여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심의 후 확정한다.

제39조(만기연장) 위탁펀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운용유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유형을 달리하여 만기 연장할 수 있다.

- 1. 연간간접투자계획상 운용방식 변경이 정해진 경우
- 2. 운용수익률 제고에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 2 절 위탁운용사에 대한 선정 및 평가

제40조(선정 및 평가 시기)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를 포함한 위탁운용사의 선정 및 평가는 '<별표 3> 운용사 평가기준' 또는 '<별표 5>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자금배분기준'에 따라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자산운용 담당부서장이 효율적인 투자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중수시로 할 수 있다.

제41조(선정 및 평가절차) ① 수탁고 1조원 이상인 운용사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.

- ② 위탁운용사는 지원유형별로 제안서심사를 통해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최종선정하며, 필요시 프리젠테이션 심사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.
- ③ 운용유형별 평점 합계순위를 기준으로 '<별표 3> 운용사 평가기준'에서 정한 바에 따라 A, B, C등급으로 분류한다.

제42조(투자한도 및 사후관리) ① 등급별, 운용사별 투자한도는 '<별표 4> 등급 배분 및 개별기관별 투자한도'에 의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일임계좌에 대한 투자 여부에 관계없이 위탁운용사 및 연기금투자풀에 대한 투자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. 다만, 현금성자금 운용금액은 투자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기금투자풀의 경우 등급별 한도는 A등급을 적용하되, 운용사별 투자한도의 적용은 배제한다. 또한 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연기금 투자풀에 우선하여 운용할 수 있다.
- ④ 선정 제외 또는 평가등급 변경 등으로 인하여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평가일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.
- ⑤ 위탁 후 운용사에 대하여 수시 및 주기적 점검과 제출주기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운용사의 운용보고서 평가를 통해 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다. 다만,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의 경우 제37조에 의한 연간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.
 - 1. 일 단위 : 일별 거래내역 점검(Guideline 준수여부), 운용성과 등
 - 2. 주 단위 : 포트폴리오 현황, 운용성과 등
 - 3. 월 단위 : 포트폴리오 현황, 운용성과, 주요 매매종목, 손익분석, 운용전략, 시장전망 등
- ⑥ 제5항에 따라 실시한 운용사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중도환매, 해소 요구, 위탁자금 회수 또는 운용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- 1. 위탁계약 6개월경과 이후 운용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의 70% 이하인 경우
 - 2.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
 - 3. 위탁운용기간 중 2회 이상 'C등급'으로 분류된 경우

제43조(거래정지) ① 운용실적 저조 또는 간접투자지침 위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 회수된 펀드의 위탁운용사에 대하여는 해지일로부터 3개월간 해당 유형의 신규거래를 중지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용유형 및 등급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제 3 절 판매회사에 대한 선정 및 평가

제44조(선정 및 평가 시기) 판매회사의 선정 및 평가는 '<별표 2> 판매사 평가 기준'에 따라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자산운용 담당부서장이 효율적인 투자의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.

제45조(선정 및 평가 절차) ① 판매회사의 선정 및 평가는 영업용순자본비율 250%이상이고 총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회사를 평가 대상으로 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.

- ② 판매회사는 운용유형에 관계없이 제안서심사를 통해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최종선정하며, 필요시 프리젠테이션 심사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.
- ③ 평점 합계순위를 기준으로 '<별표 4>등급배분 및 개별기관별 투자한도'에서 정한 바에 따라 A, B, C등급으로 분류한다.
- ④ 은행권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시에는 <은행권 평가기준>에 따른다.

제46조(투자한도) ① 등급별, 판매사별 투자한도는 '<별표 4>등급배분 및 개별 기관별 투자한도'에 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일임계좌에 대한 투자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회사 및 연기금투자풀에 대한 투자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. 다만, 현금성자금과 은행권 확정금리형(정기예금, 정기예금, CD, 환매채 등) 운용금액은 판매회사의 투자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④ 선정 제외 또는 평가등급 변경 등으로 인하여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평가일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.

<별표 1>

은행권 금융기관 평가기준

1) 평가항목

구 분	평가항목	배 점	평가방법
	총자산규모순위	30	· 평가일 현재 가장 최근 결산서상 총자산 적용
-11	BIS자기자본비율	20	· 평가일 현재 가장 최근 BIS자기자본비율적용
재무구조	고정이하여신비율	20	· 평가일 현재 가장 최근 고정이하여신비율 적용
	총자산이익률	20	· 평가일 현재 가장 최근 총자산이익률 적용
신용등급	국내신용등급	10	· 한국기업평가, 한국신용평가, 한국신용정보 3개 기관의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등급 중 최하등급 적용
	합 계	100	

2) 평가항목별 배점

평가 항목	항목별 배점									
총자산규모순위	1위~5위		6위 ~10위		0위	11위~15위		1.	15위 미만	
(연결 F/S 기준)	30	30		20		10			0	
prost state to the	13%이상		12%이상		11%	5이상 10%이건)%이상	-	10%미만
BIS자기자본비율	20		15		1	10		5		0
	1.0%미만	1.4%	미만	2%미만		2.5%미만 3.0%		미만	3.0%이상	
고정이하여신비율	20	1	.6	12		8		۷	1	0
	1.0%이상	(0.8%이상		0.6%이상		0.4%이상		}	0.4%미만
총자산이익률	20		15		10		5			0
7 7 7 6 5 7	AAA	1	AA+ol	상 A+		이상 BBB이성		BB이상	-	BB-이하
국내신용등급	10		8		(6 4			0	

[※] 총점이 동일한 경우 총자산규모순위, BIS자기자본비율, 고정이하여신비율, 총자산이익률, 국내신용등급 순으로 고득점 기관을 상위순위로 평가

<별표 2>

판매사 평가기준

평가 항목	배점	세부평가항목 및 배 점		평가내용
		영업용 순자본 비율	6	P _{70 이상} : 배점의 100% P _{30~70} : 배점의 70% P _{30 미만} : 배점의 30%
		자기자본비율	6	P _{70 이상} : 배점의 100% P _{30~70} : 배점의 70% P _{30 미만} : 배점의 30%
재무 안정성	30	총자산 이익율	6	P _{70 이상} : 배점의 100% P _{30~70} : 배점의 70% P _{30 미만} : 배점의 30%
		부채비율 (부채총계/자 본총 계)	6	P _{70 이상} : 배점의 100% P _{30~70} : 배점의 70% P _{30 미만} : 배점의 30%
		총자산규모	6	P _{70 이상} : 배점의 100% P _{30~70} : 배점의 70% P _{30 미만} : 배점의 30%
		수익증권 총 판매실적	5	P _{70 이상} : 배점의 100% P _{30~70} : 배점의 70% P _{30 미만} : 배점의 30%
시장지배력	20	법인고객 수익증권 판매실적	5	P _{70 이상} : 배점의 100% P _{30~70} : 배점의 70% P _{30 미만} : 배점의 30%
		연기금 관련펀드의 수익증권 판매실적	10	P _{70 이상} : 배점의 100% P _{30~70} : 배점의 70% P _{30 미만} : 배점의 30%
운용성과	20	판매상품 운용성과	20	탁월 20점, 우수 16점, 보통 10점, 미홉 4점, 기타 0점
		투자 상품 수요 파악 및 설계 능력	10	탁월 10점, 우수 7점, 보통 3점, 미흡 0점
관리 및 서비스 제공	30	판매상품의 관리정도	10	판매상품의 수익률 및 리스크관리 탁월 10점, 우수 7점, 보통 3점, 미흡 0점
능력		대 기금제공서비스	10	자산운용 및 투자정보제공 등 서비스, 판매 상품 관련 업무처리 서비스 탁월 10점, 우수 7점, 보통 3점, 미흡 0점

[※] $'P_{\triangle\triangle}$ 이상' 은 평가항목 운용사 실적이, 정규분포下 누적확률값 \triangle \triangle % 이상인 경우

[※] 극단치(Outlier) 처리방법 : 항목평균과의 차이가 표준편차의 3배 이상인 운용사 실적을 극단치로 정의 하고, 발생원인 등을 감안하여 0점을 하한으로 평점 부여

<별표 3>

운용사 평가기준

평가항목			À	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		
및 배경	섬	세부 평가항목 및 배기	점	세부평가내용		
		자기자본/자본금 비율	3	300% 이상(3점), 200% 이상(2점), 100% 이상(1점), 100% 미만(0점)		
		자기자본 이익율	3	20% 이상(3점), 10% 이상(2점) 5% 이상(1점), 5% 미만(0점)		
		최근 3년간 순이익 현황	3	최근3년 연속흑자(3점), 최근2년 연속흑자(2점), 최근1년 연속흑자(1점), 기타(0점)		
재무 건전성	15	부채비율 (부채총계/자본총계)	3	50% 미만(3점), 100% 미만(2점) 150% 미만(1점), 150% 이상(0점)		
		총 수탁고	3	(혼합형, 주식형) 5,000억이상(3점), 3,000억이상(2점), 2,000억이상(1점), 2,000억미만(0점) (채권형) 1조 이상(3점), 7,000억이상(2점), 4,000억이상(1점), 2,000억미만(0점)		
		운용전문 인력수	5	자산운용협회에 등록된 운용전문 인력 수 보유현황 10명이상(5점), 7명이상(3점), 5명이상(1점),기타(0점)		
운용조직	20	업계평균경력	5	P _{70 이상} : 배점의 100% P _{30~70} : 배점의 70% P _{30 미만} : 배점의 30%		
및 전문인력	20	1인당 운용규모	5	P _{70 이상} : 배점의 100% P _{30~70} : 배점의 70% P _{30 미만} : 배점의 30%		
		해당 지원유형 수탁고	5	P _{70 이상} : 배점의 100% P _{30~70} : 배점의 70% P _{30 미만} : 배점의 30%		
11		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	5	P _{70 이상} : 배점의 100% P _{30~70} : 배점의 70% P _{30 미만} : 배점의 30%		
과거 운용 성과	20	운용사평균 대비 RRAR	10	P _{70 이상} : 배점의 100% P _{30~70} : 배점의 70% P _{30 미만} : 배점의 30%		
		과거 연기금 운용실적	5	탁월(5점), 양호(3.5점), 보통(2.5점), 미흡(0점) (운용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3점 부여)		

		투자시스템 현황	8	DB 및 모델 보유, 모델의 우수성/활용도 (실질적으로 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여부) (배점구분 : 상8점, 중5점, 하2점)
투자 및 리서치 30 프로세스		투자 의사결정 체계		투자의사결정체계의 합리성, 의사결정의 집중도, 의사결정과정상 역할 및 책임범위, 조직관리의 효율성 (배점구분 : 상8점, 중5점, 하2점)
		리서치 체계		자체 리서치 조직 및 인력 보유 유무 내 외부 리서치 실제 활용도 및 네트워크 구축 (배점구분 : 상8점, 중5점, 하2점)
		운용사 운용스타일	6	운용스타일의 정립(명확성, 일관성)
위험관리 및	15	리스크 관리 체계	7.5	위험관리기준 ,권한, 기능수행절차 등 (배점구분 : 상7.5점, 중4점, 하1.5점)
컴플라이언 스	15	15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		컴플라이언스기준, 권한, 기능수행절차 등 (배점구분 : 상7.5점, 중4점, 하1.5점)

- ※ 'P△△ 이상' 은 평가항목 운용사 실적이, 정규분포下 누적확률값 △△% 이상인 경우
- ※ 극단치(Outlier) 처리방법: 항목평균과의 차이가 표준편차의 3배 이상인 운용사 실적을 극단치로 정의 하고, 발생원인 등을 감안하여 0점을 하한으로 평점 부여
- ※ RRAR(Relative Risk-Adjusted Return) = (펀드평균수익률—동일유형펀드평균수익률)/동일유형초과수익률의 표준편차

<별표 4>

등급배분 및 개별기관별 투자한도(외부위탁 금융기관별 공통사항)

등급	등급배분	개별기관별 투자한도
A	평가순위 상위 30%이내	전체운용금액의 40%
В	평가순위 상위 60% 이내로서 A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	전체운용금액의 30%
С	A급이나 B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	신규투자제한

※ 전체운용금액이라 함은 은행권 금융기관, 판매사, 운용사별로 각각 배분된 금액을 말함

< 별표 5>

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자금배분기준

가

MMF 상품

- ♦ MMF 상품운용시 주간사간 배분비중은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아래의 평가항목에 따른 주간사간 획득점수를 비롯하여 투자시점의 금융시장, 제안상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
- 평가항목은 연기금투자풀 펀드평가사가 제공하는 결과 값을 활용하며, 필요시 주간사로부터 자료를 요구하여 자체 산정·적용할 수 있음

1) 평가항목

	평가항목(배점)	세부평가항목	비고
7] 71-71-7] (100)	상품판매능력 및 상품안정성	MMF 수탁고(60)	구간별 점수화
정량평가(100)	위험조정성과	MMF 샤프비율(40)	구간별 점수화

2) 세부평가 항목별 배점

① MMF 수탁고

수탁고	점 수	비고
2조원 이상	60	
1.5조원 이상 ~ 2조원 미만	50	
1조원 이상 ~ 1.5조원 미만	40	평가일 이전 최신자료 활용
5천억원 이상 ~ 1조원 미만	30	
5천억원 미만	20	

② MMF 샤프비율

사고비 (그기	점	수	비고	
샤프비율 <u>구간</u> 	A주간운용사	B주간운용사	n) <u>r</u>	
<u>A-B > 0.3</u>	40	0		
$0.2 < A-B \leq 0.3$	35	5	평가일 이전 최신자료를 활용하며,	
$0.1 < A-B \leq 0.2$	30	10	무위험수익률은 통안증권 365일물・	
$0 < A-B \le 0.1$	25	15	기준금리 등 사용	
<u>A-B = 0</u>	20	20		

<u>* A≥B 라고 가정</u>

나

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상품

- ◈ 채권형·주식형·혼합형 상품운용시 주간사간 배분비중은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아래의 평가항목에 따른 주간사간 획득점수를 비롯하여 투자시점의 금융시장, 제안상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
- 평가항목은 연기금투자풀 펀드평가사가 제공하는 결과 값을 활용하며, 필요시 주간사로부터 자료를 요구하여 자체 산정·적용할 수 있음

1) 평가항목

평가항목(배정)		세부평가항목	비고
<u> 정량평가(100)</u> 조	거리기 그 ㅇㅇ 러리(100건)	BM대비 초과성과(50점)	구간별 점수화
	전체기금 운용성과(100점)	위험조정성과_샤프비율(50점)	구간별 점수화

※ 복수 주간사 중 한 곳이 유형별 전체기금 운용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주간사 0점 처리

2) 세부평가 항목별 배점

① BM대비 초과성과

유형명	점수부여기준						
배 점	<u>50</u>	<u>40</u>	30	20	<u>10</u>		
· 채권형	0.75%p이상	0.5%p이상	0.25%p이상	0%p이상	0%p미만		
· 주식 및 혼합형	3%p이상	2%p이상	1%p이상	0%p이상	0%p미만		

② 위험조정성과 샤프비율

가 보다 이 그 지	점	수	비고	
샤프비율 <u>구간</u>	A주간운용사	B주간운용사	n) <u>1/</u>	
<u>A-B > 0.3</u>	<u>50</u>	0		
$0.2 < A-B \leq 0.3$	<u>45</u>	<u>5</u>	평가일 이전 최신자료를 활용하며,	
$0.1 < A-B \leq 0.2$	<u>40</u>	<u>10</u>	무위험수익률은 통안증권 365일물・	
$0 < A-B \leq 0.1$	<u>35</u>	<u>15</u>	기준금리 등 사용	
<u>A-B = 0</u>	<u>25</u>	<u>25</u>		

* A≥B 라고 가정

서 약 서

본인은 『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』 위촉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하겠습니다.
-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자산운용
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-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및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하지 않겠습니다.
- 투자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투자기관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·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않겠습니다.
- 관리기관(농업정책보험금융원)이 발주하는 법률자문, 소송대리,
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지 않겠습니다.

0000년 00월 00일

소 속:

서 명: (인/서명)

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귀하